April
2025

NEWSLETTER

국제통상팀 | International Trade Team

CONTACT

고문 박태호
T: 02.6386.6680
E: taeho.bark@leeko.com

고문 최석영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

고문 한진현
T: 02.6386.0770
E: jinhyun.han@leeko.com

고문 이태호
T: 02.772.4396
E: taeho.lee@leeko.com

외국변호사 정기창
T: 02.772.5904
E: kichang.chung@leeko.com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 주요 내용과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1월 20일 취임 당일 발표한 미국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와 2월 13일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 각서를 통해 무역에서의 상호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4월 2일 발표된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4월 5일 시행)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4월 9일 시행)으로 정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은 법적 근거로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법(NEA), 1974년 무역법 제604조, 3 U.S.C. § 301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명령 부속서 I 기준).

캄보디아(49%), 베트남(46%), 스리랑카(44%), 방글라데시(37%), 태국(37%), 중국(34%), 대만(32%), 인도네시아(32%), 스위스(32%), 남아프리카공화국(31%), 파키스탄(30%), 인도(27%), 한국(26%), 일본(24%), 말레이시아(24%), EU(20%), 필리핀(18%), 이스라엘(17%), 영국(10%), 브라질(10%), 싱가포르(10%), 칠레(10%), 호주(10%), 튀르키예(10%), 콜롬비아(10%) 등 (관세율 높은 순)

* 다만 백악관 발표에서 사용된 패널에는 한국 25%,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필리핀 17%, 파키스탄 29%로 기재되어 내용상 차이가 있는바, 추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는 정확한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부과된 관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변호사 박정현
T: 02.6386.6649
E: junghyun.park@leeko.com

변호사 주현수
T: 02.6386.6363
E: hyunsoo.joo@leeko.com

변호사 김혜수
T: 02.772.5906
E: hyesoo.kim@leeko.com

변호사 권영호
T: 02.6386.0797
E: youngho.kwon@leeko.com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베네수엘라 관련 2차 관세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특정 품목(행정명령 부속서 II 참조)
- 향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 금괴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기타 광물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상대국의 무역 적자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을 차별하는 대우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까지 금번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교역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기초해 볼 때, 미국 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상품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외국과의 교역 중 불공정하고 비상호주의적 측면을 시정한다는 상호관세의 취지에 따라 각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경우 상호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무세화되었으므로, 미국이 계속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들이 향후 협상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31일에 공개된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미국의 입장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문제제기한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 NTE 보고서상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제기 사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화학물질	■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이행방안에 대한 규제당국의 지침 부족 ■ 영업비밀정보의 보호 부족 ■ 검사 대상 화학물질 선정 및 검사 방법 관련 투명성 부족
포장재 및 라벨링 규정	■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장공간비율 계산 방법 관련 명확성 부족 ■ 소형 전자기기의 출시 전 포장재 및 라벨링 검사를 규정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른 출시 지연

위생 및 식물위생(SPS) 장벽	
생명공학	■ 5개 정부기관의 중복되는 검토와 과도한 데이터 요구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법」상 비효율성에 따른 신규 생명공학제품 승인 절차의 부담과 지연 ■ 2024년 국회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미국은 2024년 9월 24일 한-미 FTA SPS 위원회에서 한국의 농생명공학 제품 승인절차와 유전자편집을 통해 얻은 제품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였음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인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을 16년째 유지하고 있음 ■ 다진 쇠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은 월령과 무관하게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반추동물 원료가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 2003년부터 미국산 반추동물 제품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6년 반추동물 원료가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의 시장접근 재개를 요청하였음 ■ 미국 정부는 2018년 5일 농식품부에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등을 포함하는 반려동물 사료에도 시장접근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음 ■ 농식품부는 2025년 1월 15일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공표하였음
원예작물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심의 중인, 다음과 같은 작물에 대한 시장접근 요청: 미국산(오리건 주 제외) 블루베리, 미국 11개 주의 감자, 체리수입프로그램의 개선, 사과 / 배 / 미니당근 / 딸기 / 캘리포니아 핵과 /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 한-미 양국은 미국산 상품의 접근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24일 한-미 FTA SPS 위원회와 2024년 11월 양자 plant health technical meeting에서 이를 논의하였음
잔류허용기준 (MRL)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수산물 등 일부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MRL이 없는 경우 Codex 기준이 아닌 0.01ppm의 일률기준 적용

정부조달	
ICT 장비 공공조달을 위한 암호화 및 보안 요건	■ IT 제품 조달 시 국정원의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한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 부과: 한-미 양국 모두 국제 공동평가기준 상호인정협정(CCRA) 회원국임에도 국내 공공부문 시장의 90% 이상에 SES가 추가 요건으로 적용됨. ■ 네트워크 장비 조달 시 국정원이 인증한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 요구: 국내에서 개발된 ARIA 및 SEED 암호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암호화 모듈만을 인증하였음. 다만 국정원은 2024년 9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모듈인 AES도 인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까다로운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CSAP) 요구: 미국은 2024년 5월 16일 클라우드 보안인증 요건을 국제표준과 합치하도록 요구하였음. 국정원은 2024년 9월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발표하였음.
국방조달에서 절충교역	■ 국방 절충교역을 통한 국산기술·제품 우선 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 위조품 환적 ■ 지리적 표시제(GI) ■ 지식재산권 침해를 저지하는 데 충분한 민형사상 제재 부족

서비스 장벽	
시청각 서비스	■ 온라인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을 레거시 미디어 규제체계에 편입하려는 행정부 및 입법부의 시도
보험 서비스	■ 재보험사의 개인정보 국외 반출 불가: 금감원의 2022년 및 2024년 해석 변경, 2024년 9월 23일 한-미 FTA 금융서비스 위원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
전문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설립 시 지분, 법인 형태, 업무 범위 등 제한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장벽	
망사용료	■ 외국의 콘텐츠 제공자의 국내 ISP에 대한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
경쟁정책	■ 일부 한국 기업과 다수의 미국 기업에만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제공자 규제안: 미국 정부는 투명성 개선과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요청
위치기반정보	■ 위치기반정보의 국외 반출 시 허가 요구: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국 정부는 지도제작 또는 위치기반정보의 반출을 단 한 번도 허가한 바 없음
데이터 현지화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한적인 국외이전 허용 ■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국외이전 정지 명령
국가핵심기술 관련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장벽	■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기 부문 등) 유출 방지를 위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투자 장벽	
	■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미개방 ■ 뉴스제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25% 제한 ■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49% 제한 ■ 원자력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미개방 ■ 수력, 화력, 태양력, 기타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30% 제한 ■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 제한

기타 장벽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인증을 요구하는바, '중요사항'의 기준 모호 ■ 세관당국이 국내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과 달리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권한 보유
제약 및 의료기기	■ 약가 책정 및 환급 정책 관련 투명성 부족과 정책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의견제출 기회 부족 ■ 혁신형 제약기업(IPC)으로 선정될 경우 세액공제, R&D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IPC 인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하지 않음

미국이 문제제기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은 대부분 우리 정부의 규제 조치들입니다.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USTR의 NTE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규제 조치들을 실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TR의 NTE 보고서에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잔류허용 기준에 대해 틀리게 이해하는 오류도 발견되는바,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협상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한-미간 협상에서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MO 허용이나 약가 책정 등과 관련된 바이오헬스 산업,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망사용료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디지털 산업,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 부문,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은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정부조달이나 투자 제한이 완화되는 분야와 관련된 국내 산업도 향후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문제제기한 환율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한-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와 교역상대국간의 협상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관련 동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